

대구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2101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박한결

피고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상, 이지은

변론 종결2022. 11. 10.

판결 선고2022. 12.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C 사이에 2021. 3.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3. 16. 접수 제126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0. 5. 11.부터 2020. 4. 27.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4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연번에 따라 '이 사건
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D이 E은행,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일반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에 기하여 D은
2010. 5. 13.부터 2020. 4. 29. 사이에 위 은행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1	2010. 5. 11. 2011. 5. 11.1) 이후 2021. 4. 29.까지로 연장되었다..	G	4억 2,500만원	E은행	일반자금	2010. 5. 13.	5억 원
2	2012. 11. 22. 2013. 11. 22.2) 이후 2021. 11. 12.까지로 연장되었다..	H	4억 2,500만원	E은행	기업구매 자금	2012. 11. 28.	5억 원
3	2017. 11. 13. 2018. 11. 13.3) 이후 2021. 11. 12.까지로 연장되었다..	I	4억 2,500만 원	E은행	일반자금	2017. 11. 16.	5억 원
4	2020. 4. 27. 2021. 4. 27.	J	2억 8,500만 원	F은행	일반자금	2020. 4. 29.	3억 원

나) C은 이 사건 제1 내지 3신용보증약정 당시 D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2)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C의 연대보증채무 가) D이 E은행, F은행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21. 4. 27. 및 4. 30. 신용보증사고가 각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8. 3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D의 E은행,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제1신용보증약정	E은행	429,496,034	-	429,496,034
제2신용보증약정	E은행	429,600,929	2021. 8. 31. 3,036,710	426,564,219
제3신용보증약정	E은행	429,574,164	2021. 8. 31. 1,530,000	428,044,164
제4신용보증약정	F은행	286,215,971	2021. 8. 31. 100,000,000	186,215,971
합계		1,574,887,098	합계 104,566,710	1,470,320,388

나) 2021. 10. 13. 기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1,496,626,457원4) 이다.

한편 같은 날 기준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1,309,721,490원5) 에 이른다.

나.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피고 A 부분) C은 2021. 3. 15. 피고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21. 3. 16. 피고 A에게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피고 B 부분) 가) C은 2021. 3. 17.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21. 3. 17.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제3근저당권 설정 전에 근저당권자 E은행의 채권최고액 8억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자 E은행의 신청으로 2021. 7.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대구지방법원 K), 위 경매절차에서 2022. 9. 22. L 주식회사에게 매각됨으로써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는 C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을 별지 채권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채무자 C은 그가 운영하던 D,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물품을 공급받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2010. 5. 11.부터 2020. 4. 27.경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21. 4. 27. 및 4. 30. D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21. 8. 31.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초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해행위 가) 관련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와 사이의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C이 운영하는 D은 강구조물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약 10년 이상 철강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A로부터 그 사업에 필요한 철근 등을 공급받아 왔다.
- ② D과 피고 A의 1회 거래금액은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이었다. D과 피고 A 사이의 거래 중 2020. 4. 20. N 영천현장에 사용할 C형강 공급계약에 기한 자재대금이 가장 높은 거래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은 39,088,912원이었다. 2021. 1. 31. 기준 피고 A가 D과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대금은 40,329,823원에 이르렀다.
- ③ C은 2021. 3.경 피고 A에게 O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철근과 C형강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A는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음에도 이전의 거래와는 달리 다량의 물품공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추가 공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 ④ 이에 C은 2021. 3. 15.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16.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⑤ 피고 A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2021. 3. 31. D에게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철근 및 직접 생산한 C형강을 납품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금난에 처한 D의 대표이사 C은 피고 A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D과 자신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 A가 실제 D에게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한 이상,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통해 회사를 갱생하기 위하여 한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D은 이미 도급받은 O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철근 및 C형강이 필요하였는데, 2021. 1.경부터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외상거래가 불가피하여 피고 A가 아닌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철근 및 C형강을 공급받기는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 신축공사를 비롯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② C은 이 법정에서 '피고 A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준공하여 약속이행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담보제공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하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C은 실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 이후 피고 A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받아 전부 ○ 신축공사에 투입하여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 또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 A로부터 철근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 신축공사를 비롯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D 및 자신의 변제 자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그 목적에 따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에 2021. 1. 31. 기준 D의 피고 A에 대한 미지급대금 40,329,823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미지급대금은 D과 피고 A의 약 10년 이상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위 미지급대금을 위한 담보설정과 2021. 3. 31. 1억 1,000만 원 상당의 철근 및 C형강을 공급받거나 향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은 불가피하게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피고 A의 D에 대한 채권 총액은 149,996,282원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담보제공은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B과 사이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이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하였던 M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으로부터 횡성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2020. 4. 14.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설비공사를 도급금액 7억 4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주는 등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Q에게 15개의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② 2021. 1. 15. 기준 Q가 M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은 1,240,364,000원에 이르렀다. Q는 2021. 1. 15. Q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위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M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③ 피고 B은 2021. 1. 15. C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횡성공장 신축공사 중 Q가 하도급 받은 설비공사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④ 이에 C은 2021. 1. 15.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서(을다 제2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1. 본인(C, 이하 같다)은 M 대표로서 2021. 1. 15.까지 Q에 대한 M의 공사 미수대금이

1,240,364,000원임을 확인합니다. 이중 10억 원에 대하여는 2021. 1. 15. Q가 피고 B에게 채권양도하였음을 M에 대하여 통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위 대금을 2021. 3. 15.까지 MI Q와 피고 B에게 각 지급할 것을 연대보증합니다. 만약 위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연체이자를 내기로 하고 연체이자에 대하여도 확인자가 연대보증합니다.

3. 위 제1항 및 제2항 지급 연대보증금액에 대하여 M이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 중 피고 B에게 채권양도한 10억 원에 대하여는 C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4.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Q에 대한 M의 미변제 대금에 대하여 채권양수인 피고 B와 Q에 변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일내에 미변제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에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합니다.

⑤ C은 2021. 3. 1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⑥ 이후 Q는 위 횡성공장 신축공사 중 하도급 받은 설비공사를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 진행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금난에 처한 M의 대표이사 C은 Q로 하여금 하도급 받은 설비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M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결국 대표이사인 자신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Q가 실제 하도급 받은 설비공사의 잔여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한 이상,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통해 회사를 갱생하기 위하여 한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M은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을 마쳐줄 당시 이미 Q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12억 원이 넘는 상황이고, 그 외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다른 채무도 존재하여 추가대출 등을 통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이에 C은 공사 완공 시 이익이 크고, 마무리 공사 단계(C은 '기성고가 약 93%에 이르렀다.'고 증언하였다)에 있던 횡성공장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그에 따른 수익으로 M과 자신이 처한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② C은 이 법정에서 '추가 공사비까지 32억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횡성 P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Q는 실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 이후 하도급 받은 설비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C은 횡성공장 신축공사를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 또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Q로 하여금 설비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횡성공장 신축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자신과 M의 변제 자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그 목적에 따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M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10억 원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로, 위 10억 원에는 횡성공장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M과 Q 사이의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10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는 M과 Q의 2019. 9.경부터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추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담보설정은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C이 연대보증한 채무액과 동일한 액수인 10억 원으로 설정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은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훈

판사손용도

판사이호선

별지

1) 이후 2021. 4. 29.까지로 연장되었다.

2) 이후 2021. 11. 12.까지로 연장되었다.

3) 이후 2021. 11. 12.까지로 연장되었다.

4) =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 잔액 1,470,320,388원 + 대지급금 22,895,913원 +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추가보증료 2,721,160원 +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 추가보증료 557,490원 및 확정손해금 131,506원

5) =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496,626,457원 -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 잔액 186,215,971원 -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 추가보증료 557,490원 및 확정손해금 131,506원